

# 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31,454,460	15,943,634
일반회계	435,750,801	13,072,524
특별회계	95,703,659	2,871,110
공기업특별회계	38,865,362	1,165,961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38,865,362	1,165,961
기타특별회계	56,838,297	1,705,149
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	30,569,690	917,091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16,893,394	506,802
농공지구조성사업	620,977	18,629
의료급여기금운영	1,555,784	46,674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086,400	32,592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5,933,399	178,002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78,653	5,36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3,202,747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5,636,60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